

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

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이순우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9. 27.

운 영 위 원 회

전 문 위 원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경 과

의안 제392호로 2024년 9월 13일 이순우 의원 외 4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, 별표에 기재된 일수를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 
경조사 휴가일수 확대(안 별표 3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: 해당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개정 조항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### ○ 주요 내용으로

- 별표3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.

### ○ 검토결과

- 지난 '24년 7월 2일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상위법 별표1 중 “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조사 휴가일수”가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 되었음.
- 충분한 애도 및 추모 기간으로 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, 상위법과의 정합성도 제고할 수 있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 참고 자료

1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[별표 1]

<개정 2024. 7. 2.>

## 경조사 휴가일수표 (제7조의7제2항 관련)

구분	대 상	일수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출산	배우자	1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)
입양	본인	20일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	3일

비 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